

# 2025학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입시 기본계획 (수시, 정시'나')

## 1.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단위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수시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정원내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82	132
				추천자전형 (담임목회자, 교목, 교사)	25	
				사회적배려대상자	10	
				검정고시출신자	15	
		정원외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4	26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특수교육대상자전형	15	
				재외국민과 외국인(2%)	3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정시'나'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정원내	수능	일반전형	22	22
		정원외	수능	농어촌학생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재외국민과 외국인(2%)	제한 없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 신학부로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기독교심리상담학전공 으로 배정)
2.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3. 수시모집 전형일이 다른 전형의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함.
4.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나'군에서 추가하여 선발

## 2. 지원자격

### ■ 수시모집

모집시기	전형명	지원 자격
수시	일반전형	가.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추천자전형 (담임교역자, 교육, 교사)	가.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0년 2월 이후 졸업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사회적배려대상자	가.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0년 2월 이후 졸업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다자녀가정 자녀 -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의 자녀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순직자 포함)의 자녀 5. 환경미화원의 자녀 6.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7. 농어촌 목회경력(3년 이상(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된 목회자의 자녀 <b>8. 자립지원대상자</b> <b>[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b> <b>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b> <b>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b> <b>③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b>
	검정고시출신자	가. 검정고시출신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자
	농어촌학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2020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부·모·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나.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다.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2%)	모집요강 참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 참고

※ 공통 :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 ■ 정시 '나'

모집시기	전형명	지원 자격
정시'나'	일반전형	가.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학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 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2020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부·모·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나.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다.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2%)	모집요강 참조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 참조

※ 공통 :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가. 수시

모집 단위	정원 구분	전형명	선발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배점(%)			실질 반영 비율(%)			
				학생부	면접 (구술)	기타	학생부		면접 (구술)	기타
							교과	비교과		
신학부	정원 내	일반전형 추천자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검정고시출신자	일괄 합산		<b>20 (200)</b>	<b>80 (800)</b>			<b>20</b>	<b>80</b>
	정원 외	농어촌학생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특수교육대상자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재외국민과외국인(2%)	일괄 합산		100 (1000)					

※ 1. 최저학력기준 없음 2.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 80% 반영

#### 나. 정시 '나'

모집 단위	정원 구분	전형명	선발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수능	면접
신학부	정원내	일반전형	일괄합산	80(800)	20(200)
	정원외	농어촌학생	일괄합산	80(800)	20(20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합산	80(800)	20(200)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일괄합산		100(1000)

※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학생부 반영방법

#### 가.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모집단위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수시	신학부	100	100	100	90	출결 10
정시 '나'	신학부	100	100	100	90	출결 10

**나.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 및 점수 산출 활용 지표**

모집시기	반영 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수시	1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b>학년별 각 1과목</b> 2, 3학년: 국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영어교과 <b>학년별 각 1과목</b>	석차등급
정시 '나'	1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b>학년별 각 1과목</b> 2, 3학년: 국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영어교과 <b>학년별 각 1과목</b>	석차등급

- ※ 1. 지정교과가 없을 경우 ① 사회 또는 과학 교과목 ② 제2외국어 교과목 ③ 학교 지정 교과목 순  
2. 각 학년별 최고 등급 1과목씩 3개 교과 반영(총 9과목)

**다. 학생부 비교내신 반영방법(검정고시 및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 수시일반전형**

**①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 반영방법**

- 검정고시 성적표의 평점(평균)을 5등급화 하여 반영
- [점수 평균산출 공식] : 최고점수 720점, 기본점수 360점  
기본점수 +  $\{((5-\text{반영과목의 평균등급})/4) \times (\text{최고점수}-\text{기본점수})\}$

평점(평균)	90이상	80~89	70~79	60~69	60미만
교과 등급	1	2	3	4	5
비교과점수	40	39	38	37	36

**② 국외고 출신자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 반영방법(국외고 성적만 반영)**

- 교과별 단위수 :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단위수는 3단위로 하며 사회 및 그 외 과목은 2단위로 함
- 취득성적에 따라 5등급화 하여 반영
- [점수 평균산출 공식] : 최고점수 720점, 기본점수 360점  
기본점수 +  $\{((5-\text{반영과목의 평균등급})/4) \times (\text{최고점수}-\text{기본점수})\}$

학업성취도	A <sup>+</sup> , A <sup>0</sup> , A <sup>-</sup>	B <sup>+</sup> , B <sup>0</sup> , B <sup>-</sup>	C <sup>+</sup> , C <sup>0</sup> , C <sup>-</sup>	D <sup>+</sup> , D <sup>0</sup> , D <sup>-</sup>	E, F
	90이상	80~89	70~79	60~69	60미만
교과 등급	1	2	3	4	5
비교과 점수	40	39	38	37	36

**5.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시기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활용지표	비고
	국어	영어	탐구		
정시 '나'	40	40	20 (사탐, 과탐, 직탐 중 최고 1과목)	1. 백분위: 국어, 탐구 2. 등급: 영어	영어 등급을 백분위로 환산 후 반영

- \* 한국사 응시 필수
- \* 영어등급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95	85	75	65	55	45	35	25	15

## 6.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입학 허용 기간 : 고교 졸업 후 2년 6개월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2%)	① 해외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재직)/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표준화

나.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

대 상	지 원 자 격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외국인 TOPIK 3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li> <li>•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TOPIK 3급 이상)</li> </ul>

## 7. 기타

가. 수시모집 복수지원 : 수시모집의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2024학년도와 동일).